청탁금지법의 대상자와 범위

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?

공직자, 언론사 · 사립학교 · 사립유치원 임직원, 사학재단 이사진 및 배우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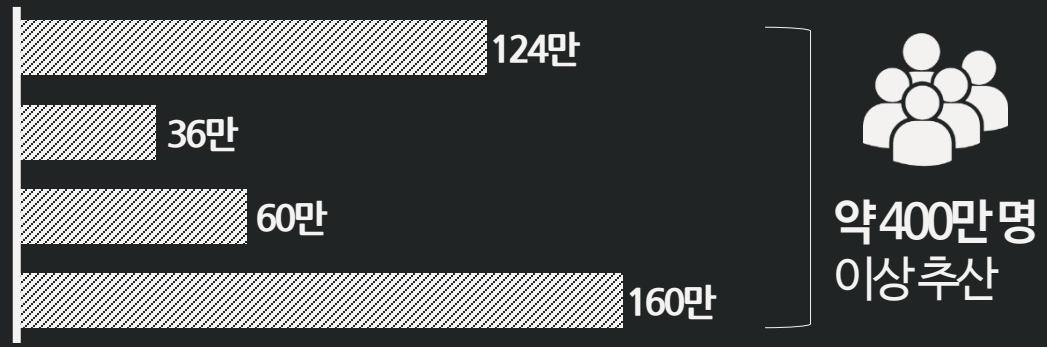

*우리나라 인구 100명 당 8명이 해당

청탁금지법 법률 적용대상

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?

적용대상기관

- **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국가인권위원회,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및 시·도 교육청**
  (공직유관단체,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른 기관 모두 포함)

- **유치원, 초 · 중 · 고 및 대학교 등 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**

- **『사립학교법』에 따른 학교법인**

- **언론사(방송, 신문, 잡지 등 정기간행물 사업자, 뉴스통신사업자, 인터넷신문 사업자)**

청탁금지법 법률 적용대상

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?

적용대상자

- **(공무원)**
 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임용·복무·신분보장 등에 있어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

※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

: 사법연수생, 수습으로 근무하는 자,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(청원경찰법 제5조) 등

공무원은 수행하는 직무의 종류를 불문하고 모두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

청탁금지법 법률 적용대상

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?

적용대상자

- **공직자 등의 배우자**
  : 공직자의 **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**했을 경우에만 적용

- **공무수행사인**
  :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**공직자가 아닌 위원**
  : **권한을 위임·위탁 받은** 법인·단체·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
  법 적용 대상자에 해당

청탁금지법 법률 적용대상

공무수행사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

공무수행사인

: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

2.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위탁 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
3.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
4.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 · 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
   - 공무수행사인의 경우 '공무 수행과 관련'하여서만 부정청탁 금지 및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규정을 적용
   - 공무수행사인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 등을 적용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은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에 따라 상이

공무(업무)와 관련된 사항만 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,
공무수행사인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

청탁금지법 법률 적용대상

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?

적용대상자

- **공직자 등의 배우자**
  : 공직자의 **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**했을 경우에만 적용

- **공무수행사인**
  :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**공직자가 아닌 위원**
  : **권한을 위임·위탁 받은** 법인·단체·개인 등과 같은 공무수행사인도 적용 대상

- **일반 국민**
  :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한 민간인
  : 공직자 혹은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도 아니 된다.

청탁금지법 장소적 적용 범위

청탁금지법, 해외에서는 적용 안될까?

1. 대한항공에서 일어난 청탁
2. 외국에 출장 간 공무원이 받은 식사대접
3. 타이항공에서 일어난 국내 공무원의 부정청탁
4. 아시아나 항공에서 공무원에게 부정청탁을 한 외국인

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기 때문에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됨

청탁금지법 적용대상 한 눈에 정리하기

1. 청탁금지법 적용대상기관

- 헌법기관,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청 등 모든 공공기관
-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, 학교법인, 언론사

2.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

- 공직자,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,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
- 공직자 등의 배우자, 공무수행사인, 청탁하는 일반 국민

3. 청탁금지법 장소적 적용 범위

- 대한민국 내 내국인/외국인 포함, 대한민국의 선박, 항공기 내 포함
- 대한민국 국적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 외국인도 포함됨